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980호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정 준 화 \*

#### 1. 들어가며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직거래 공간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만 보더라도 127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6만여건의 직거래 게시물(누적 2억6천만건)이 올라오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지마켓·옥션·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중고다나와' 같은 인터넷쇼핑 몰과 달리 직거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당사자간 가격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거래는 약속된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직거래 판매자는 오픈마켓 쇼핑몰 사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 구매안전서비스제공 의무가 없어서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샀는데 택배로 배달된 것은 빈 술병이나 벽돌뿐이었다는 뉴스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가 않다.

전체 중고상품 직거래 중에서 사기 사건 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기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직거래 시장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온라인 중고 사기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2. 온라인 중고 직거래 사기 현황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더치트' 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온라 인 사기는 총 3만8천건이고 피해금액은 1 백1십억원이었다. 2010년 대비 사기 건수 는 138%, 피해금액은 91% 증가했다.

[그림 1] 최근 5년간 온라인 사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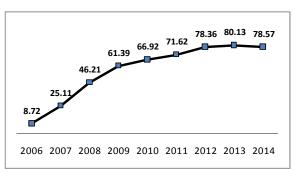


자료 : 더치트 홈페이지 자료 가공(최종검색일 : 2015. 4. 2.), <a href="https://thecheat.co.kr">http://thecheat.co.kr</a>



온라인 사기의 대부분은 '네이버 중고나라'와 같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직거래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온라인 사기 중에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사기의 비율은 2006년 8.7%에서 2014년 78.6%로 약 80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마켓·옥션·11번가' 같은 인터넷오픈마켓과 이터넷쇼핑몰을 통한 사기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직거래 통로인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번개장터'와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2] 네이버 카페를 통한 온라인 사기 비율(%)



자료 : 더치트 홈페이지 자료 가공(최종검색일 : 2015. 4. 2.), <a href="http://thecheat.co.kr">http://thecheat.co.kr</a>

경찰청의 단속 결과에서도 온라인 사기의 대부분은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4년 5월 1일부터 6 개월간 실시한 '인터넷사기 집중단속' 결과 4,929건의 인터넷 물품사기 중에서 직거래 사기가 4,891건(99%)이었다.1)

피의자는 10~20대가 전체의 82.2%이며, 남성이 86.4%였다. 이들은 현금결제 유도, 임시 연락처 이용, 중고거래 사이트에 직거 래 광고게재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저가 상품을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이 많았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쇼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상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성급하게 직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대처 방안

#### (1) 외국의 제도

주요 국가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외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대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유럽연합<sup>2)</sup>과 영국<sup>3)</sup>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구매자의 권리, 판매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 거래 계약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거래에 관한 조항은 없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도 전자상거래 구매자와 판매자의 배송 및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간 인터넷 중고상품 직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기의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항은 없다.4)

외국에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일반 전자상거래 규정

<sup>1)</sup> 경찰청, 「인터넷사기 집중단속 6개월간 5,405 명 검거」, 보도자료, 2014년 11월.

<sup>2)</sup>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sup>3)</sup>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up>7</sup>A Gudie for Business to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SI 2002/2013)<sub>1</sub>.

<sup>4)</sup> Federal Trade Commission, 「Business Guide to the FTC's Mail, Internet, or Telephone Order Merchandise Rule, 15 U.S.C. 57a Section 435<sub>1</sub>.

과 민·형사상 규정만으로도 중고상품 직거 래 문제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상품 거래가 면대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이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2) 국내의 제도

한국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고상 품 직거래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온 라인 중고 사기의 처벌과 피해 보상은 통상 적인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온라인 중고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 전국(netan.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중고상품 거래를 약속한 대화 내용, 물건 값을송금한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하고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고소(告訴), 그렇지 않으면 진정(陳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 처벌과는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지불한 가격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민·형사상 처벌과 배상보다는 환불·교환 이 목적이라면 피해자는 조정기관에 당사자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정 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의 전자거 래분쟁조정위원회(ecmc.or.kr)와 한국소비 자원(kca.go.kr) 등이다.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는 방안도 있다. 더치트(thecheat.org)에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사기꾼의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누적되어 다른 구매자들이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와 거래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입력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결합하면 인적사항이 모호한 사기꾼의 정보를 추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4. 개선 과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조치는 구매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정부는 구매자들이 현명 하게 중고상품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조 치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 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 (1) 홍보와 교육 강화

구매자의 현명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 사기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직거래 구매자들이 판매자가 제시하는 저렴한 현금 거래 유혹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의식한 판 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 고거래 사기의 유형, 이를 피하는 방법, 직 거래 약속 이후에 사기 징후를 파악하는 방 법, 사기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골고루 전달되어야 한다.

중고 사기에 관한 홍보와 교육은 사기 발생 유형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기 발생 비율이 높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카페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사기 예방과 대응에 관한 안내 메시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비율이 높은 학생과 주부들에게도 맞춤형 홍보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2) 법·제도 정비

통상적인 거래안전 제도를 중고상품 직거 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만 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제도,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등이 그 대상이다.

중고상품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 간을 제공해 주는 인터넷 게시판 운영 주체 도 직거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뿐 만 아니라 (가칭)통신판매기회제공자의 의무 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기 피해 대응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가 단일 창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경찰, 법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공유사이트 등 여러 기 관에서 유사한 정보와 대응 서비스를 중복 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관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중고 사기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택배 운송장번호만 믿고 상품 배송을 기다리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아니라택배회사(배송사업자)가 운송장번호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5. 나가며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차이(비대칭 정보)로 인한 시장실패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정부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구매자가 직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고, 이를 통해 역선택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가해자를 찾아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존 법률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